

의안번호	2206903
의 퇴 인	김예지의원
회 답 일	2025. 1. 21.
추계번호	24C6323

급식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제정안에 따라 급식안전관리 기본계획 수립 등을 위해 예상되는 추가재정 소요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총 1억 6,400만원(연평균 3,300만원)으로 추계됨

[표 1]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추계: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연평균
급식안전관리 기본계획 수립(안 제6조)		70	—	—	—	70	14
급식안전관리협의체 설치·운영(안 제7조)		11	11	11	11	44	9
급식안전관리에 관한 실태조사(안 제8조)	50					50	10
합계	50	81	11	11	11	164	33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급식안전관리 기본계획 등(안 제6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급식안전관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함	의무규정
2	급식안전관리협의체 설치 등(안 제7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급식안전관리 정책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으로 구성된 급식안전관리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함	의무규정
3	실태조사(안 제8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급식안전관리정책 및 공통기준 수립 등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급식안전관리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음	재량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4	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운영(안 제16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급식제공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함(제1항)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하거나 「식품위생법」 제89조에 따른 식품진흥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음(제4항)	의무규정 재량규정
5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운영(안 제17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급식관리지원센터의 통합 운영·관리와 급식제공시설의 급식안전관리 지원을 위하여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지원 총괄과 급식관리지원센터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음(제1항)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의3에 따른 식생활안전관리원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음(제2항) 국가는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의 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할 수 있음	재량규정
6	급식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안 제19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급식안전관리를 체계적·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국민에게 급식에 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통합정보시스템(이하 “급식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음	재량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급식안전관리 기본계획 등(안 제6조)	○	
2	급식안전관리협의체 설치 등(안 제7조)	○	
3	실태조사(안 제8조)	○	
4	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운영(안 제16조)	×	- 실시 중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5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운영(안 제17조)	×	- 실시 중
6	급식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안 제19조)	×	- 실시 중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안 제16조),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운영(안 제17조), 급식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안 제19조)과 관련하여서는 현재 관련 사업을 아래와 같이 수행하고 있어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함

[표 2] 제정안과 현행 사업 비교

재정수반요인	현행 사업(2024년 기준)
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운영 (안 제16조)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운영) 제1항 및 제5항 - 지역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603억원)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운영(안 제17조)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의3(식생활안전관리원의 설치·운영) 제1항 및 제4항 - 식생활안전관리원 운영(24억원)
급식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안 제19조)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운영) 제1항 및 제5항 - 급식관리지원센터 홈페이지 운영(25백만원)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제정안 부칙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으로 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가. 급식안전관리 기본계획의 수립(안 제6조)

- 제정안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급식안전관리 기본계획(이하 “기본 계획”이라 함)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하는 경우 정책연구비 등 추가 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기본계획은 실태조사 이후 다음 연도에 수립하는 것으로 가정함
-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유사 사례를 준용하여 추계함
 - 「식품안전기본법」에 따른 식품안전관리기본계획을 위한 정책연구비로 2025 년도에 9,000만원의 예산이 편성(국조실)됨

[표 3]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추계: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급식안전관리 기본계획 등 (제6조)		70	-	-	-	70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나. 급식안전관리협의체 설치·운영(안 제7조)

- 급식안전관리협의체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내 유사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위원회 경비를 준용하여 추계함
 -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 위원회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 제25조에 따라 어린이 기호식품과 단체급식 등의 안전과 영양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위원회로서, 위원 수당(1,000만원)과 사업 추진비(100만원) 등 1,100만원 예산이 편성(2024년 기준)되었음¹⁾
 - 협의체는 하위규정 제정(2026년) 이후 기본계획 수립 등을 위해 2027년 부터 운영되는 것으로 가정하여, 그 시점부터 비용을 추계함

1)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위원회는 연 4회 회의가 개최되는 것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였고, 협의체 또한 이에 준하여 회의가 개최되는 것으로 가정함

[표 4] 급식안전관리협의체 설치·운영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2026	2027	2028	2029	2030	합 계
급식안전관리협의체 설치·운영(안 제7조)		11	11	11	11	44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다. 실태조사(안 제8조)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급식안전관리정책 및 공통기준 수립 등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급식안전관리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는데 소요되는 추가재정소요는 향후 5년간 5,0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
 - 급식안전관리 실태조사는 관련 사업체 조사를 하는 것으로서, 문체부가 2020년 수행한 “국악산업 통계 조사”가 이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고, 당시 조사용역비 4,200만원과 소비자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개정안에 따른 실태조사 비용을 5,000만원으로 추정함
- 급식안전관리에 관한 실태조사는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전제로서, 개정안 시행 첫해(2026년)에 조사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가정

[표 5] 급식안전관리에 관한 실태조사 실시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 계
실태조사(안 제8조)	50					50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V. 부대의견

- 없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사회비용추계과	이제정	이진우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이제정	02-6788-3739	jejeong2@na.go.kr